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 주류제조자의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하면서 관련 서
식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14.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주조연도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인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 9. 영 제30조에 따른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1.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주소 (본점 소재지)			
제조장 위치			

2. 신고내용

상표명	주류의 종류	알코올 함량	용량	용도구분	사용예정일	신규/변경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자동계수기 사용점검 기록부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15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생 략) <u><신 설></u>	제9조(납세증지를 붙이는 주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주 조연도 반출량이 일정수량 미만 인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 한 주류에 대해서는 납세증지의 첩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12조(서식) ----- ----- -----. 1. ~ 7. (현행과 같음) 8.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 10호서식 9. 영 제30조에 따른 자동계수 기 사용점검 기록부: 별지 제1 1호서식